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86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이종배·김성원·성일종

강승규 • 박덕흠 • 이종욱

김위상 · 엄태영 · 서천호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 및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등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 또한 흉포화되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또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제25조의2, 제30조의3, 제55조의2 및 제70조제1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참석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를 "대리 인등이"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 기일·장소, 심리 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등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 2. 피해자등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제70조제1항 중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년부 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부터 적용한다.

③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심리의 방식) ①・② (생	제24조(심리의 방식)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변호인 · 배우자 ·		
	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		
	리인등"이라 한다)가 참석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		
	<u>야 한다.</u>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변호인 • 배우자 •	<u>대리인등이</u>		
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			
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		
	지)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		

<신 설>

는 그 대리인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 기일·장소, 심리 결과 등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등의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 제70조(조회 응답) ①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 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 2. 피해자등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 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군사상 필요한 경우 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